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27
----------	------

발의연월일 : 2017. 9. 13.

발 의 자 : 유성엽 · 김종회 · 황주홍
장정숙 · 이용호 · 최명길
이찬열 · 조배숙 · 이동섭
오세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교비 횡령 등으로 국고 등에 귀속된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 용도 외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안 제35조제1항).

나. 이로 인해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과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으로 한다.

1.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제3항 중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2.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3.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4.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이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의 지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
 6.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
- 제3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중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기금으로 관리·운용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p>	<p>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 -----.</p> <p>1.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경우 <u>우</u></p> <p>2. 파산한 경우</p> <p>3.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이 제29조제6항 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 인가 또는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과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 ----- -----</p>

귀속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

---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지되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의 등록금 환불액
2.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해당 학기 인건비 부담액
3.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4. 해산되는 학교법인 또는 폐지되는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면직하는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이 경우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의 지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

5. 기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재원

6.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한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중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은 기금으로 관리·운용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